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2011-222호

예고기간 : 2011. 5. 2 ~ 23

담당부서 : 전력계통과(02-2110-494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내용

- 가. 전기사업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제2항 신설).
- 나. 전기위원회의 재정을 위한 재정의 신청·각하·중지·철회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 다.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전기위원회 심의·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 라. 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장애를 주는 지상물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안 제44조의4 신설).
- 마.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안 제44조의5 신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2011-62호

예고기간 : 2011. 4. 12 ~ 5. 2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02-2100-5333)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개정이유

부산 「우신골든스위트(‘10. 10. 1)」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등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제외된 정정보건서

설을 포함하는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을 개선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 다.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개선함(안 제22조 개정)
- 라.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안 제23조 개정)
- 마.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제한함(안 제23조의2 신설)
- 바. 소방계획 수립시 피난계획 부분과 자위소방대 임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개정)
- 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 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개정)
- 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4 개정)
- 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 령 : 제2011-130호

예고기간 : 2011. 4. 20 ~ 5. 11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02-2100-3909)

전문참고 : 행정안전부(www.mopas.go.kr)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의 효율을 높이고 3D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
-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129호

예고기간 : 2011. 4. 20 ~ 5. 11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02-2100-3909)

전문참고 : 행정안전부(www.mopas.go.kr)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효율화하며 그밖에 국가기준과의 통일성 유지 및 관련기관 개정건의, 민원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 나.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 다.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 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도 3천만원, 시·군·구 2천만원, 도서 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 바.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 사.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 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 자.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126조제2항)

낙찰자의 구제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만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만해(滿海)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02-595-9191)

Q 1순위의 낙찰자가 부당한 입찰 절차에서 탈락한 경우 낙찰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A 제1순위 낙찰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나 낙찰자 선정무효 확인의 소 또는 적격 심사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순위 낙찰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후순위 낙찰자의 지위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판례는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 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적격 심사 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0000. 00. 00. 조달청 시설 공고 제0000-00호로 긴급 공사 입찰 공고하여 같은 해 00. 00. 실시한 ‘입찰공고 공사명’의 입찰에 있어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0000-00호)에 따른 적격 심사 절차 등 낙찰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주문한 예가 있고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2000. 00. 0.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00-0호로 공고하여 2000. 00. 00. 실시한 ‘부산 000000 건립 공사 입찰’에 있어서 채권자를 포함한 공동 입찰자들이 지방 자치 단체 적격 심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에 따른 적격 심사 대상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와 같이 기재한 예가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1. 수고하십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설계감리 대상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설계감리 대상용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라고 명기된바

4. 전력기술관리법상 설계감리 대상이나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감리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설계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단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의 설계감리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위 규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설계감리를 의미하는 바, 전력시설물공사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1. 3)

•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장입니다.

• 공사규모는 세대수는 360세대, 층수는 15층, 연면적은 65,000제곱미터, 전기감리대상 공사비는 33억원입니다.

• 위 재건축공사의 전기감리자는 책임감리원이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특급감리원으로 등재된 감리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동 전기공사의 책임감리원을 발주자가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가 가능한 법적기준 및 자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고시)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PQ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 자격가점 포함)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공고 시 경력 6년 이상이면 만점 → 경력 8년에 기사자격 소지자(책임감리원)가 낙찰된 경우 → 교체는 경력 6년 이상이고 기사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가능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1. 20)

3. 주택건설공사 시업수행능력 평가시 상주감리원이 소방감리원(주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으로 등재만 되어 있고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던 경우 (소방상주 및 소방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상주감리원이 전기감리원으로 소방감리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제4호에 따라 전기감리업의 기술인력(전기감리원)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소방감리원)은 서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PQ평가시 전기상주감리원이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만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1. 20)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 배치기준)제9항 전기분야기술사 책임감리원 배치관한입니다.

상기 운영요령 제25조제9항제3호에 명기된, 10만볼트 이상의 구내배전설비공사가 포함된 복합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 ,

- 1) 복합 전력시설을 전체공사기간동안 전기분야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 2) 10만 볼트이상 구내배전설비공사 기간동안만 전기분야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도 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9항에서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구내배전설비공사 등에 대하여는 전기분야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0만볼트 이상 구내배전설비공사를 포함하여 복합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1건으로 발주 받은 경우라면 공사 전체기간동안 전기분야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2. 4)